

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 
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8 월 19 일

여 수 시 장 2024.8.19



여수시 조례 제2118호  
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4항 중 공영주차장 관리자(시장 및 제9조 제2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가 주차요금을 “경감하는 자동차 및 경감 비율은”을 “감면하는 자동차 및 감면 비율은”으로, “주차요금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이”를 “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제12호, 13호,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두 자녀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: 주차요금의 50% 감면 (단,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.)
13. 세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: 주차요금의 100% 감면 (단, 세 자녀 세대의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네 자녀 이상 세대는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한정한다.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.)
14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: 주차요금의 100% 감면(단,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,

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.)

제6조 제8항 (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나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차량 중 1대를 선정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,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이용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.)을 삭제하고 제6조 제9항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)을 제6조 제8항으로 한다.

제8조(주차장의 표지) 제2항 별표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바탕 색채를 타 시·군 조례 및 도로표지규칙 제8조에 맞춰“녹색”에서“청색”으로 한다.

제12조(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제1항 별표5 “교통약자전주차장”을 “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”으로 하고 “4세 이하의 영유아”를 “7세 이하의 영유아”로 한다.

제16조의3(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)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전시장 및 자동차관련시설, 태양광 발전시설, 집배송시설로 하며, 총 시설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제22조(보조의 대상) 제1항, 제23조(보조의 방법) 제1항 중 “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”를 “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영주차장 감면 적용대상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6조 제8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 받은 자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제6조(주차요금 등)</b> ④ -----주차요금을 경감하는 자동차 및 경감비율은 -----다만, 주차요금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	<b>제6조(주차요금 등)</b> ④ -----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자동차 및 감면비율은 -----다만,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<b>&lt;신 설&gt;</b>	12. 두 자녀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중 1대 : 주차요금의 50% 감면 (단,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 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. 13. 세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: 주차요금의 100%
<b>&lt;신 설&gt;</b>	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감면 (단, 세 자녀 세대는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, 네 자녀 이상 세대는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일 경우에도 허용한다.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 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.)</p> <p>14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의 차량 중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: 주차요금의 100% 감면 (단,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,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.)</p>
<p>⑧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나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차량 중 1대를 선정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</p>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<p>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,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며 무료이용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한다.</p> <p>제16조의3(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별 표1에 따른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전시장, 자동차관련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로 하며,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.</p> <p>제22조(보조의 대상)</p> <p>①시장은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-----</p> <p>제23조(보조의 방법)</p>	
	<p>제16조의3(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별 표1에 따른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전시장, 자동차관련시설, 태양광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로 하며,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.</p> <p>제22조(보조의 대상)</p> <p>①시장은 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-----</p> <p>제23조(보조의 방법)</p>

<b>현 행</b>	<b>개 정 안</b>														
①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-- -----	①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-- -----														
<p>[별표 3]  <b>주차장이용 안내표지</b>  (제8조제2항 관련)  (생략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재료</th> <th colspan="2">색채</th> </tr> <tr> <th>바탕</th> <th>글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노상 주차장</td> <td>알루미늄판</td> <td>녹색</td> <td>흰색</td> </tr> <tr> <td>공영노외 주차장</td> <td>알루미늄판</td> <td>녹색</td> <td>흰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재료	색채		바탕	글씨	노상 주차장	알루미늄판	녹색	흰색	공영노외 주차장	알루미늄판	녹색	흰색
구분	재료			색채											
		바탕	글씨												
노상 주차장	알루미늄판	녹색	흰색												
공영노외 주차장	알루미늄판	녹색	흰색												
<p>[별표 3]  <b>주차장이용 안내표지</b>  (제8조제2항 관련)  (현행과 같음)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재료</th> <th colspan="2">색채</th> </tr> <tr> <th>바탕</th> <th>글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노상 주차장</td> <td>알루미늄판</td> <td>청색</td> <td>흰색</td> </tr> <tr> <td>공영노외 주차장</td> <td>알루미늄판</td> <td>청색</td> <td>흰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재료	색채		바탕	글씨	노상 주차장	알루미늄판	청색	흰색	공영노외 주차장	알루미늄판	청색	흰색
구분	재료			색채											
		바탕	글씨												
노상 주차장	알루미늄판	청색	흰색												
공영노외 주차장	알루미늄판	청색	흰색												